요 약

제1장 서 론

- 현행 공공공사의 입찰 제도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근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토대로 기술 위주의 입찰 방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입찰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 절감 및 기술 경쟁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기술제안입찰제도의 현상(現狀) 및 논점

1. 개요 및 도입 경과

-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자가 미리 결정한 공사계획 및 설계 범위 안에서 시공사가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 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및 공기(工期) 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임.
-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크게 1)기술제안형 입찰 방식과 2)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설계 대안이나 시공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받아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함.

·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설계 공모 등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낙찰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함.

- 정부에서는 2007년 9월「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도입하였고,「지방계약법」시행령도 2007년 9월 개정되어 기술제안입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 공사에 처음으로 기술제안입찰이 시범 적용된 바 있음.

2. 기존 입찰 제도와 기술제안입찰의 비교

1) 기존 입찰 제도와의 비교

-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PQ점수로 평가하고,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저가심의를 통하여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도입에 의한 공사비 절감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기술제안입찰에서는 PQ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술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입찰에 반영하는데, 기술제안서의 평가 항목은 공사비 절감 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 방안, 공기 단축 방안, 공사관리 방안,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임.

- 입찰 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단가형 내역입찰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창의적인 VE기법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입찰 방식별 적용 시점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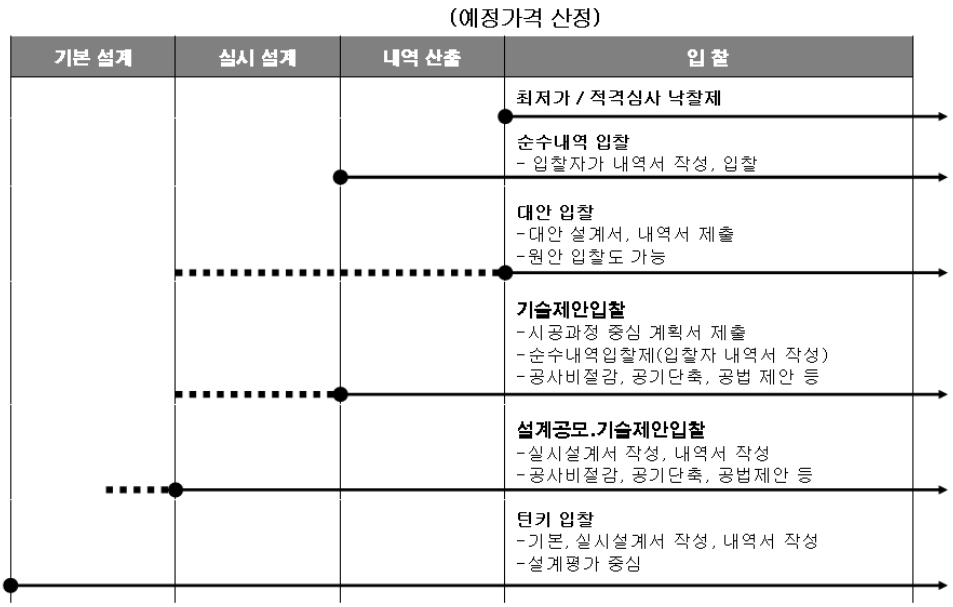

주 : … 표시는 설계나 내역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임.

2) 기술제안입찰과 대안입찰(alternative bid)의 비교

-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적으로 대안입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대안입찰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시설계와 내역서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반면, 기술제안입찰은 소위 순수내역입찰로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내역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실시됨.

·또한, 대안입찰은 주로 설계 대안의 제시에 중점이 두어지나, 기술제안입찰은 공법 개선이나 원가절감 제안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음.

3) 설계시공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비교

- 설계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찰자가 설계 업무를 담당하지만,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설계 하에서 입찰자가 실시설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주로 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서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술제안에 중점을 두어 심의가 이루어짐.

3.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논점

-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 건설업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음.

1) 기술제안입찰이 턴키공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2)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3) 건설회사에서는 영업팀, 견적팀, 설계VE팀, 시공기술팀 등이 연계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나, 상당 부분을 용역회사에 외주(outsourcing)를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음.
4) 기술제안서 가운데 공사관리 부분은 공사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계획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서류 작업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5) 공기 단축 계획을 평가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획된 공기 단축을 위하여 무리한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공사 품질의 저하와 더불어 야간 작업, 휴일 작업 등으로 노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6)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사를 선정한 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6개사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7) 기술제안서에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나 회사의 노하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입찰에서 탈락시 불이익이 우려됨.
8) 제안된 기술에 대하여 단순히 공사비 절감 가능성만을 평가하고 있어 원가절감 가능성은 낮으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9) 낙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에 근거하여 정확히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제안된 기술이 공사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사후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함.

제3장 해외 사례 ;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도

1. 종합평가 방식의 특징 및 적용 실태

- 일본에서는 통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그것을 밑도는 최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발주하려는 공사 내용이 고도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활용하여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기술 제안도 고려한 다음,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종합평가 낙찰방식은 「간이형」, 「표준형」 및 「고도기술제안형」의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됨.

- 종합평가 낙찰방식에서 입찰자에게 요구하는 기술 제안의 내용은 공사의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 기술적 개선 가능성, 공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일반경쟁입찰은 입찰공고로부터 입찰까지 표준적으로 50일 전후가 소요되나, 고도기술제안형 종합평가 방식은 가장 기간이 짧은 유형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함.

- 국토교통성에서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한 건수는 1999년도 2건, 2000년도 5건, 2001년도 34건, 2002년도 472건, 2003년도 617건, 2004년도 426건으로서,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적용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2. 종합평가 방식의 평가 방법

- 종합평가 방식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제산(除算) 평가법, 가산(加算) 평가법, 환산 가격법 등이 있는데, 그동안 국토교통성에서는 제산(除算)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해 왔음.

·그런데 제산 평가방식은 가산 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기술제안의 내용이 열악하더라도, 덤핑 등의 저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산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3. 유형별 적용 대상 공사 및 평가 내용

1) 고도기술제안형 종합평가 방식

- 고도기술제안형 종합평가 방식은 민간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공사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공사 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높은 공사에 활용됨.

·경쟁 참가자에게 구조 검토나 특수한 시공법,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공사 목적물의 내구성, 강도, 유지 관리의 용이성, 환경보전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고, 기술 제안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고도기술제안형을 적용하는 공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표준안의 유무, 요구하는 기술 제안의 범위, 발주 형태가 다름.

·Ⅰ형 및 Ⅱ형은 디자인·빌드 방식을 적용해, 시공 방법과 더불어 공사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도 기술 제안을 요구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나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은 기술 제안을 기초로 작성됨.

·Ⅲ형은 발주자가 상세(실시) 설계를 실시하지만, 고도의 시공 기술이나 특수한 시공 방법 등의 기술 제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사 가격의 차이에 비하여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예정가격은 기술 제안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도기술제안형 공사의 분류 >

분류	표준안의 유무	요구하는 기술제안의 범위	발주 형태
통상의 구조, 공법에서는 공기 등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사가 실시되기 어려운 경우	없음	-공사 목적물 -시공방법	설계시공일괄
상정되는 유력한 구조 형식이나 공법이 복수 존재하기 때문에 발주자로서 미리 1개의 구조, 공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폭넓게 기술제안을 요구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없음(복수의 후보 있음)	-공사 목적물 -시공방법	설계시공일괄
표준기술에 의한 표준안에 대하여 고도의 시공기술이나 특수한 시공방법의 활용에 의해 사회적 편익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있음	시공방법(시공방법의 변경에 의해 공사 목적물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는 공사 목적물의 변경을 인정)	설계시공분리

- 고도기술제안형의 심의에 있어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기술제안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일부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입찰자의 기술 대화를 통해서 기술제안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는 입찰자에게 개선안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2) 표준형 종합평가 방식

- 표준형 종합평가 방식은 고도의 기술 제안을 필요로 하는 공사 혹은 기술적 개선의 여지가 작은 공사 이외의 공사로서,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 교통 확보, 특별한 안전 대책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고, 성능 등을 수치화하거나 또는 정성적으로 표시하는 판정 방식 및 순위 방식 등에 따라 성능과 입찰 가

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임.

3) 간이형 종합평가 방식

- 간이형 종합평가 방식은 기술적인 개선 여지가 작은 공사로서, 간단하고 쉬운 시공 계획이나 동종·유사 공사의 경험, 공사 성적 등에 기초하여 성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임.

·간이형은 현장 조건 등을 근거로 적절하고 확실한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고 쉬운 시공 계획을 평가하게 됨.

제4장. 입찰 사례 조사 ; 일본 국토교통성의 예

- 기술제안입찰의 실시 사례로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디자인빌드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마츠야마(松山)시 내에서 일반 국도 11호와 일반 국도 33호(松山環狀 마츠야마 환상)가 교차하는 코사카(小坂) 교차점의 4차선 입체화 공사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음.

·동 공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특기시방서, 입찰설명서 및 도면 등을 토대로 입찰자로부터 기술 제안을 받아들여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시행한 공사임.

- 본 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제안과 거기에 필요한 비용 견적을 제안받고, 의견 청취와 심사를 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이 뛰어난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술제안입찰 및 PQ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1) 우리나라의 PQ심사는 단순히 도로·철도 등으로 구분하고, 유사 공사까지 포함하여 실적 보유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동종 공사로 한정하여 실적 심의를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종 공사일지라도 구조 형식이나 가설 공법의 종류 등 동일한 공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통하여 동일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음.
2)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는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보유 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 요건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입찰 당시 투입예정기술자가 다른 공사의 종사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

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상세설계 기간은 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240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 기간이 470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 기간에는 우천·휴일 등에 의한 불가동일을 150일 정도 포함해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있음.

4) 기술 제안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술 제안을 요구하고 있음.

제5장. 한·일 기술제안입찰제도 비교 및 제도 개선 방향

1. 원가 절감보다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제안 활성화

-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이 활발해질 필요성이 있음.

·일본에서는 공사 목적물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도 인정하고 있음.

·기술제안입찰의 평가 항목을 단순히 공사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 지향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됨.

2. 기술제안의 질적 향상 유도

1) 제안된 기술제안서의 개선 허용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은 불완전할 수 있으며, 발주자 측에서 더 좋은 개량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에서는 기술제안 내용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기술제안이 되는 경우나 일부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의 심사시 제안자에게 제안된 해당 기술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2) 제안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

- 회사 고유의 노하우나 경험을 토대로 제안된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은 회사

고유의 지적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주자나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에서 제안된 기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제안 기술을 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요구됨.

3)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의 다양화

- 기술제안서 평가시 입찰자의 수에 따라 점수 분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치 방식, 판정 방식, 순위 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함.
- 기술제안서를 무조건 점수화하여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히 순위 평가만을 함으로써 인위적인 점수 조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4) 최고의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예정가격 산정

- 원가 절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정가격의 상향 조정 등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장려해야 함.

·일본도 예정가격 이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제안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가장 원가가 높은 제안서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5) 기술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 기술제안입찰은 시공 단계의 VE는 아니나, 입찰 단계의 VE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용한 기술제안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면, 단순히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행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계약 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제안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가격보다 기술력 우선의 낙찰자 결정 강화

1) 가산(加算) 방식에 의한 평가 확대

- 기술제안입찰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단계 심의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저가 투찰로 인하여 가격이 기술을 지배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가급적 가산(加算) 평가 방식을 활용토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4. 기술력 평가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의 개선

1) 공기단축 계획의 평가 배점 축소

- 국내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 가운데 '공기단축 계획'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 시공과 산재 사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

·입찰 단계에서 단순히 '공기단축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입찰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부여하기보다는 공사 계약 단계에서 공기 단축시 이익 공유 조항(profit sharing clause) 등을 통하여 공기 단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배치 예정 기술자에 대한 평가 강화

- 단순히 회사 보유 기술자를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인 기술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해당 기술자의 시공경험이나 과거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필요시 면담 등을 포함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3) 변별력이 미흡한 사항의 평가 항목 제외

- 공사관리 방안은 프로젝트에 특화된 공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등 매뉴얼화될 우려가 높거나 명확한 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는 심의 기간의 제약으로 피상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평가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아직까지 시설물 종류별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산정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므로 생애주기비용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배점이나 중요도를 다소 낮추는 것이 요구됨.

5. 기술제안서 작성 용역비의 보상

- 현행 규정을 충족시키려면 기술제안서의 분량이 방대해질 수 있으며, 건설업체에서는 턴키나 대안입찰에 준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턴키나 대안입찰과 달리 별도의 설계 보상비를 지급

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임.

·비낙찰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며, 입찰 참가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직접 참여한 건설 컨설턴트나 중소 하도급업자의 피해가 증가될 수 있음.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받은 자 중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사에 대해서는 설계비 보상을 검토해야 함.

6. 입찰 클레임 최소화 및 기술 제안의 이행 확보

1) 입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클레임 최소화

- 기술제안입찰의 심의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가 발표하고, 공개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평가 후에는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클레임에 대비한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기술제안 내용의 이행 확보

- 기술제안입찰은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기술을 전제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주자는 계약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검증하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수주업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됨.

7. 기술제안입찰의 중·소 규모 공사 적용 확대

- 최근 국내에서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1,000억원 이상 공사 등 대형 공사 위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300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운찰제'라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제안입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중소 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간이형의 종합평가낙찰제를 벤치마킹하여 적절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야 함.

제6장. 결　론

-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보다 기술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제안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찰 제도로서 그 역할이 기대됨.

– 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국내에서는 이미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등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기술제안입찰이 대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제안입찰의 확대에 있어서는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 중소 업체가 호혜 평등한 경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우선적으로는 모든 공사 유형에서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기술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제안입찰은 대형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와 같이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기술제안입찰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즉,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공 계획서나 원가절감 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나아가 현장배치 예정 기술자와의 기술적 대화 등을 통하여 업체별 기술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